

2018년 경찰공무원(경정) 정기 승진시험

- 2교시(형사소송법) -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시험시간 [11:20 ~ 12:40(80분)]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과목 : 형사소송법(경정)

[문제 I]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X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복용 전력자 A로부터 ‘마약판매업자 甲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X는 A의 협조를 얻어 甲을 검거하기로 계획하고 A에게 ‘마약판매업자 甲과 접선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며칠 후 A는 친구 B를 통해 甲과 연락이 되었고, 서울 서초역에서 마약을 거래하기로 하였다. 서초역에서 잠복 중이던 X는 2017. 12. 5. 14:00경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A와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甲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한 뒤 현장에서 甲이 A에게 건네준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 제1호)를 압수하였다. 한편, 현장 주변에 있던 B는 甲과 A의 마약거래 현장을 목격하였다.

A는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X에게 甲과 마약류를 거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A는 甲의 보복이 두려워 자취를 감추었다.

사법경찰관 X는 2017. 12. 6. 10:00경 영장 없이 인천 부평역 인근에 있는 甲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서랍장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10정(증 제2호)을 추가로 찾아내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X는 압수한 위 알약 10정(증 제2호)에 대하여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의 필요성이 있고 甲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2. 6. 18:00 검사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2017. 12. 7. 10:00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2017. 12. 7. 20:00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전체 논점정리와 결론은 별도로 쓰지 말고, 각 문항별로 답안을 작성할 것

1. 사법경찰관 X가 甲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한가?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X가 알약 10정(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적법한가? (20점)
2. A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논하시오(증거동의를 논외로 한다). (15점)
3. 한편,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B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B는 불응하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검사가 B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5점)

[문제 II] 다음을 약술하시오.

1.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권리 (30점)
2. 증거개시 (20점)

답안 작성시 문제는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